

「개인성과관리규정」 개정사항 사전예고

(2018.4.9, 경영혁신부)

1. 내규명 : 「개인성과관리규정」

2. 제개정 이유 : 개인성과평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 변경 등

3. 주요 개정사항

□ 평가횟수 조정 (연2회 → 연1회) : 제14조(평가 대상기간 및 시기 등

- '17년도 반기평가 운영결과 및 직원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횟수를 연1회로 조정

□ 파트장 등의 평가권한 : 제15조(평가부점)

- 사업자보증 파트장, 안전관리실장, 연구조정실장 및 연구지원실장의 개인성과평가 권한 근거 마련

4. 의견제출

□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 2018년 4월 11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우편번호 48400
- 담당자 : 장선호 과장 (shluka@hf.go.kr)
- 연락처 : 051-663-8568 (Fax : 0505-036-0440)